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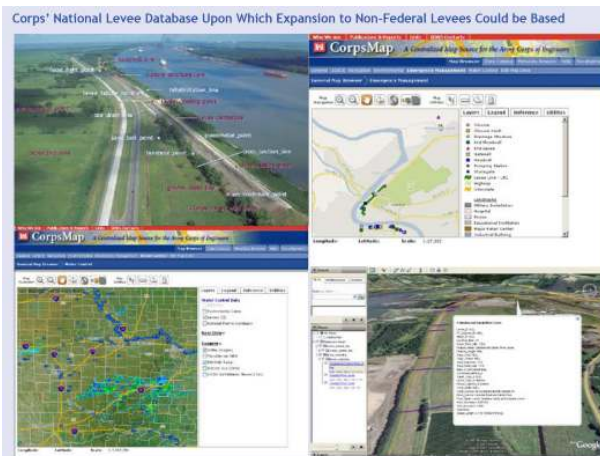
제목 : 미국 제방안전법				
작성부서	1차분류	2차분류	자료 유형	① 연구보고서 ② 중장기연구계획서 ③ 연구 프로젝트 ④ 기타
수자원연구실	수자원정책, 평가 및 관리기술	이수, 치수, 하천환경 정책 및 평가기술		
작성자 : 김주훈 수석연구원				
키워드 : Levee Safety				
<p>미국은 수자원 개발법(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 of 2007)의 “제방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부여(Title IX)”에서 국가 제방안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제방안전 프로그램은 제방의 완전하고 실현 가능한 평가와 공공, 재산, 환경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제방시스템의 안정적인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공안전 최우선”, “경제적 영향 감소”, “투자효용성 최대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개발”, 그리고 “공공의 신용과 수용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이 제방안전법에서는 제방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는 제방안전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전략계획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국가 제방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제방에 의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확보되도록 하고, 제방과 관련하여 위험의 감소와 완화를 위한 절차 - 최고의 이용가능한 공학적 정책들의 이용 촉진과 제방에 대한 조사지점, 설계, 건설, 운영과 유지, 그리고 비상대비 절차 - 주(州) 제방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촉진 및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실행을 위임한 주(州)의 효과적인 제방안전 프로그램의 확립과 실행 촉진 - 제방 인벤토리와 정밀조사 시행에 의해 적절한 보호 기준과 조화된 운영 및 유지되는 제방 보장 - 주(州) 및 국가제방 안전 프로그램의 공공 허용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교육 및 인식 사업의 개발과 지원 - 제방 보호지역의 잔존하는 위험의 공공인식 확립 - 주(州) 및 국가제방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원조 도구 개발 - 비연방 전체에 대한 제방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원조 제공을 위한 방법 개발 - 미국내 제방의 물리적으로 안전성(완전한 상태)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도구, 세미나, 가이드라인 개발 <p>2009년도 미국 의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국가 제방 위원회 설립, 국가제방대</p>				

이터베이스의 유지 및 확장, 위험잠재 분류체계, 국가 제방안전 표준 개발 및 허용 위험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전문가 평가에 의한 FEMA의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하의 제방인증 등의 내용을 제안하였고, 전략계획 실행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추진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1] 국가제방안전프로그램 전략 실행

한편,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2005년 8월 지도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FEMA 절차 각서 34에서 제방인증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FEMA의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의 적용범위에 대한 인증은, 주(州), 카운티, 또는 지역 단체에서 “제방보호 기능설명서”, “제방 및 기초 안정성 분석”, “내수배제 분석” 등의 제출을 통해 제방 시스템을 인증하고 있다. 미육군 공병단(USACE)은 국가적인 자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제방 인벤토리 생성을 위한 노력을 2006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홍수위험 전달, 제방인증, 제방검사, 홍수터 관리, 그리고 위험도 평가 등을 포함하는 활동과 연계된다.



[그림 2] 제방안전프로그램에 의한 DB구축(예)

출처 :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 of 2007
Recommendations for a National Levee Safety Program